

문서번호	기획조정실-1711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16.03.10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직무대행 방침 제 82호

★팀장	기획조정실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직무대행	
협 조				

직제규정 시행내규 중 개정내규(안)

2016. 3

직제규정시행내규중개정내규(안)

(제 안 요 지)

1. 개정사유

- 가. '공공자전거 사업' 신규수탁 운영 관련 서울시 정관개정 인가 (2016.3.10) 및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'처' 산하 '팀' 단위의 기구신설, 직급·직렬별 정원조정 등 하부직제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기구개편(제3조 제1항의 "별표1")

- 「공공자전거운영처」 산하 '팀' 단위 기구신설 : 운영팀, 관리팀
 - ▶ 본 내규 개정·시행과 동시에 현행 '공공자전거인수단(TF)' 기구 폐지

나. 정원조정(제3조 제1항의 "별표2") ... 총정원 **12명** 증원

- 「공공자전거운영처」 직급·직렬별 정원 신규반영 : + 14명
 - 신규수탁 '공공자전거 사업' 운영인력 정원반영 : 12명
 - 공공자전거 대여소 구축전담 추가인력 확보 : 2명

공공자전거 대여소 구축전담 추가 소요인력 정원 확보

(공단 요청) 기승인된 정원(12명)외 대여소 구축업무 전담 추가소요 인력에 대한 정원(2명) 확보 요청 ▶ 공공자전거인수단-276호('16.2.11)
(서울시 회신) 공공자전거 확대구축 및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의 계획과 같이 구축인원 확보 바람 ▶ 보행자전거과-1971호('16.2.12)

- 정·현원 차이와 향후 위탁감독 수행 물량 등을 고려한 공사감독2처 (상수도공사감독 회계)정원감축 : △2명
 - ※ 상수도공사감독 회계 정·현원 차이 13명(정원 45/현원·예산편성인원 32)

▶ 상수도공사 감독물량 변동추이 : ('14) 130건 → ('15) 75건→ ('16) 67건

〈부서별 정원 조정내역〉

구 분	현행	개정	증감	직급·직렬별 세부내역
계	45	57	(+12)	
공공자전거 운영처	-	14	(+14)	· 1급 1명(일반직) / 2급 2명(일반직) · 4급 5명(사무3, 시설1, 설비1) · 5급 4명(사무2, 설비2) · 6급 2명(사무1, 설비1)
공사감독2처 (상수도공사감독 회계)	67 (45)	65 (43)	△2 (△2)	· 6급 2명(시설 2)

※ 직급·직렬은 공공자전거 운영방침(이사장방침 제201호)을 토대로 해당부서 의견반영하여 일부 조정

다. 신설 기구 『공공자전거운영처』 업무분장(제16조)

- 공공자전거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
- 공공자전거 수입금 관리 및 정산 업무
- 공공자전거 홍보, 문화행사 기획 및 민간협업에 관한 사항
- 자전거콜센터 운영 관리 업무
- 자전거대여소 구축 및 시설물 유지관리
- 공공자전거 수리, 정비, 배송 등에 관한 사항
- 기타 공공자전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

라. 용어정비(제36조) : 교통시설운영처 운영팀 → 교통시설운영처 주차관리팀

* 주차관리팀 신설('14.11.28 직제내규 개정)시 조문 미개정(조직도만 개정) 사항 정비

마. 부칙 신설 : 시행일(공포일부터 시행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가결('15.12.28)
- 서울시 공공자전거 위수탁 관련 운영인력 통보(市보행자전거과-1971호, '16.2.12)
- 공단 개정정관 인가승인 통보(市보도환경개선과-3259호, '16.3.10)

나. 절 차 : 이사장 결재 후 공포·시행

직제규정시행내규중개정내규(안)

직제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기구 및 정원)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“별표1”과 “별표2”를 조문변동 없이 별지의 “별표1”과 “별표2”로 한다.

제16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42조로 하고, 제16조(공공자전거운영처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공공자전거운영처) ①공공자전거운영처장은 1급 내지 3급으로 보한다.

②공공자전거운영처장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공자전거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2.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공공자전거 수입금 관리 및 정산 업무
4. 공공자전거 홍보, 문화행사 기획 및 민간협업에 관한 사항
5. 자전거콜센터 운영 관리 업무
6. 자전거대여소 구축 및 시설물 유지관리
7. 공공자전거 수리, 정비, 배송 등에 관한 사항
8. 기타 공공자전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

제35조(주차장관리소)를 제36조(주차장관리소)로 하고, 제1항의 “운영팀”을 “주차관리팀”으로 한다.

“부칙”을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3조(기구 및 정원)① (생략) 1. 기구는 별지의 별표1과 같다 2. 정원은 별지의 별표2와 같다.	제3조(기구 및 정원)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	조문변동 없이 “별표1”, “별표2”만 변경 (별지 참조)
제16조 ~ 제41조 (생략)	제17조 ~ 제42조 (현행 제16조부터 제41조까지와 같음)	
<신설>	제16조(공공자전거운영처)① 공공자전거 운영처장은 1급 내지 3급으로 보한다. ②공공자전거운영처장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공공자전거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.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3. 공공자전거 수입금 관리 및 정산 업무 4. 공공자전거 홍보, 문화행사 기획 및 민간협업에 관한 사항 5. 자전거콜센터 운영 관리 업무 6. 자전거대여소 구축 및 시설물 유지관리 7. 공공자전거 수리, 정비, 배송 등에 관한 사항 8. 기타 공공자전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	
제35조(주차장관리소)① 교통시설운영처 운영팀 산하에 중부주차관리소, 동부주차 관리소, 서부주차관리소를 두며,(이하 생략)	제36조(주차장관리소)① 교통시설운영처 주차관리팀 산하에 중부주차관리소, 동부주차 관리소, 서부주차관리소를 두며,(현행과 같음)	팀 명칭 정비
부 칙 <신 설>	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 한다.	